

# 과업지시서

사업명	2024년 동국대학교 EDR 솔루션 유지보수 용역
주관 기관	동국대학교 정보처 정보인프라팀



2024. 04.

	성명	소속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담당	정종현	동국대학교 정보처 정보인프라팀	02-2260-3903 (02-2260-3916)	jhjung5149@dongguk.edu

# 목 차

I. 사업 개요 .....	1
II. 과업 범위 및 지시 사항 .....	4
1. 과업 범위 .....	4
2. 지시 사항 .....	5
III. 사업자 선정방법 .....	10
1. 참가자격 .....	10
2. 선정방식 .....	10
3. 견적 제출 서류 .....	10
4. 관련 문의 .....	10

1. 사업명 : 「2024년 동국대학교 EDR 솔루션 유지보수 용역」

## 2. 사업 목적

- 가. (24H \* 365일 보안관제) 24시간 365일 상시 보안관제 서비스 제공
- 나. (내부 단말 보안성 강화) 관제 대상 장비에 대한 악성 패킷, 파일 탐지, 분석을 통해 내부 단말의 보안성 강화 수행
- 다. (사후 조치 지원) 유사 시, 상세 분석 보고서를 통한 대응 방안 제공, 위협 헌팅 및 침해흔적 조사 서비스 등 사후 조치 지원

3. 사업 기간 : 2024. 05. 01. ~ 2025. 02. 28. (10개월)

\* 계약 시점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협의 후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4. 추진 배경

- 가. EDR(Endpoint Detection and Response) 솔루션 최초 도입 이후 유지보수 기간 종료(~'24.04)에 따른 신규 계약 추진
- 나. 지속적인 단말 보안 강화 및 대응 수준 고도화 필요성 증대

## 5. 사업 내용

### 가. EDR 솔루션 유지보수 용역

- 1) 대상 서버 : 학사행정시스템(uDRIMS), 포탈(Portal), 그룹웨어 등 100식에 대한 라이선스 제공
- 2) 수행 방법 : 기 설치된 SK 설더스 EDR 솔루션 Agent에 대한 상시 원격 보안관제 수행
- 3) 보고서 제공 : 상시 보안관제를 수행하며 서비스 보고서 제공

**나. 주요 과업범위**

- 1) EDR 솔루션을 통한 24시간, 365일 보안관제 서비스 제공
- 2) 운영 중인 EDR 정책에 대한 커스터마이징 지원
- 3) 운영 대행 서비스(정책 및 패턴업데이트, 예외처리 등)
- 4) 악성코드 분석 및 행위 추적 지원
- 5) 상세 분석을 통한 정탐 / 오탐 대응
- 6) 상세 분석 보고서를 통한 대응 방안 제공
- 7) 악성파일 유형 및 특이사항 보고
- 8) 위협 헌팅 및 침해흔적 조사 서비스 등

7. 용역 장소 : 동국대학교(서울캠퍼스) 다향관 3층 정보처 등

8. 배정 예산 : 미공개

9. 업체 선정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10. 단계별 제출물 목록**

구 분	순번	제출 대상
동국대학교 EDR 솔루션 매니지드 서비스 용역 사업	1	보안서약서
	2	업체 자격 관련 증빙서류

11. 대금 지급 방식 : 매월 유지보수 용역 대금 납부

## II 과업 범위 및 지시사항

### 1. 과업 범위

- 가. EDR 솔루션을 통한 24시간, 365일 Managed 보안관제 서비스 제공
  - SK쉴더스(SK Shieldus) 관제센터를 통한 24시간 365일 EDR 보안관제 서비스 제공
- 나. 운영 중인 EDR 정책에 대한 커스터마이징 지원
  - 우리대학에 반영되어 있는 EDR 정책 커스터마이징 지원
- 다. 운영 대행 서비스(정책 및 패턴업데이트, 예외처리 등)
  - “Global T.I” 기반 평판 DB 사용
  - 정책변경(탐지/차단모드) 및 신규 패턴 등장 시 업데이트 등 운영 대행
- 라. 악성코드 분석 및 행위 추적 지원
  - 에이전트가 설치된 대상 서버의 네트워크 트래픽 등 상세 패킷 분석 후 행위자에 대한 추적 지원
  - 신종 공격 탐지 머신러닝 엔진을 통한 보안 침해 탐지 제공
- 마. 상세 분석을 통한 정탐 / 오탐 대응
  - 상세 분석을 통해 정, 오탐을 가리며 오탐 시 예외처리 등 대응
- 바. 상세 분석 보고서를 통한 대응 방안 제공
  - 매주 또는 상시 보안 침해 시도등에 대한 상세 분석 보고서를 제공하며 정책변경, 대응방안 등 제공
- 사. 악성파일 유형 및 특이사항 보고
  - 탐지된 악성파일에 대한 유형 분류, 특이사항 등 종합 분석 보고
- 아. 위협 헌팅 및 침해흔적 조사 서비스 등
  - 시스템 장애, 보안사고 등 발생 시, 위협 헌팅 및 침해흔적 조사 서비스 제공 등

## 2. 지시 사항

### 가.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사업 수행 시 보안준수	필수
	SER-002	사업 종료 시 보안사항	필수
	SER-003	장비 및 자료보안	필수
제약 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수행업체 및 수행인력 제한	필수
	COR-002	데이터 수집·관리 시 제약사항	필수
	COR-003	보안지침 준수	필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PMR-001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필수
	PMR-002	과업범위 및 변경관리	필수
	PMR-003	과업 요구사항 관리	필수
	PMR-004	프로젝트 일정 관리	필수
	PMR-005	산출물 제출 및 관리	필수

### 나. 상세 요구사항

#### 1) 보안 요구사항(SER)

SER-001			
요구사항명	사업 수행 시 보안준수	응락수준	필수
상세 요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약상대자’는 동국대학교 보안업무 규정 및 행안부 “정보화용역 사업 보안관리 매뉴얼”에 의거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li> <li>‘계약상대자’는 [붙임1]의 보안 특약을 작성 제출해야 함</li> <li>‘계약상대자’는 동국대학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2]의 보안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사업관리책임자를 행정조치하고 [붙임3]의 보안 위약금을 동국대학교에 납부함</li> <li>‘계약상대자’는 [붙임6], 투입인력은 [붙임5]의 보안서약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li> </ul>		
SER-002			
요구사항명	사업 종료 시 보안사항	응락수준	필수
상세 요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종료 시 사업관련 모든 자료를 반납하고 정보보안담당자 입회하에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완전삭제 등의 보안 조치를 한 후, 사업 관련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의 [붙임7]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li> </ul>		

SER-003			
요구사항명	장비 및 자료 보안	응락수준	필수
상세 요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상대자’ 는 사업수행에 따른 조사 및 분석자료 등이 타 용도에 의로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li> <li>◦ ‘계약상대자’ 는 [붙임4]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관련 내용을 [붙임8]의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에 작성하여야 함</li> <li>◦ 제공된 내부 자료에 대해 복사 및 외부반출을 할 수 없으며, 사업 완료 후 동국대학교에 반환 하여야 함</li> <li>◦ 제공된 내부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거나,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함</li> <li>◦ ‘계약상대자’ 의 사업총괄 담당자(PM)는 동국대학교의 보안관리 담당자가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li> <li>◦ ‘계약상대자’ 는 참여인력의 노트북, 휴대용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를 반입, 반출할 때에는 [붙임9]의 외부 노트북 관리대장 혹은 [붙임10]의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악성코드 감염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안조치를 해야 함</li> <li>◦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동국대학교가 전량 회수 하고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li> <li>◦ ‘계약상대자’ 는 본 용역사업관련 모든 기록, 자료 및 산출물을 동국대학교의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자가 지정한 PC에서 관리하여야 하며, 웹하드 등에 공유 및 개인 메일함 저장을 금지</li> <li>◦ ‘계약상대자’ 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PC에 대해 네트워크 접근제어, 최신 백신 등 동국대학교가 지정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하여야 함</li> <li>◦ 용역 수행시의 PC는 원칙적으로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국대학교의 승인하에 제한적 (동국대학교 업무망에 연결되지 않은 인터넷 전용의 별도 PC 사용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동국대학교의 업무망에 원격접속을 금지함</li> </ul>		

2) 계약사항 (COR)

COR-001			
요구사항명	수행업체 및 수행인력 제한	응락수준	필수
상세 요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거해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이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신고)에 의거해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계약 체결까지 위 자격 유지</li> <li>◦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해당 업체 제한</li> </ul>		

COR-002			
요구사항명	데이터 수집·관리 시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상세 요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상대자’ 는 필요시 본 사업관련 저작권, 사용권, 특허 등에 대해 일체의 하자가 없도록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문제발생 시 제반 비용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함</li> </ul>		

COR-003			
요구사항명	보안지침 준수	응락수준	필수
상세 요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상대자’ 는 동국대학교 보안업무 규정 및 행안부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매뉴얼” 에 의거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li> <li>◦ ‘계약상대자’ 의 계약 불이행이나 기타 귀책사유로 ‘동국대학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li> <li>◦ ‘계약상대자’ 는 동국대학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2]의 보안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사업관리책임자를 행정조치하고 [붙임3]의 보안 위약금을 동국대학교에 납부</li> <li>◦ ‘계약상대자’ 는 계약내용에 따라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자기책임하에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함. 위험발생이 예견될 경우 ‘계약상대자’ 는 즉시 ‘동국대학교’ 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li> <li>◦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약기간동안 발생한 책임이행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될 때까지 유효하며 양 당사자의 승계자 및 양수인에게도 적용</li> </ul>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MR-001			
요구사항명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응락수준	필수
상세 요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업수행 장소는 동국대학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동국대학교의 승인을 득한 후 기타 장소에서도 수행할 수 있음.</li> <li>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H/W, S/W, Tool, 소모품 등)은 계약상대자가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국대학교와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음</li> </ul>		
PMR-002			
요구사항명	과업범위 및 변경관리	응락수준	필수
상세 요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 과업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li> <li>동국대학교의 방침에 따라 과업 수행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과업 수행실적이 당초 계획과 다른 경우 실제에 맞추어 정산할 수 있음</li> <li>과업수행 중 방침변경, 천재지변, 추가 과업지시에 따른 과업내용의 현저한 증가가 있을 경우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li> </ul>		
PMR-003			
요구사항명	과업 요구사항 관리	응락수준	필수
상세 요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항목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함</li> <li>본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된 사항 중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동국대학교와 계약상대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li> <li>동국대학교는 계약내용 전부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는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여야 한다.</li> <li>'계약상대자' 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의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음</li> </ul>		

PMR-004			
요구사항명	프로젝트 일정 관리	응락수준	필수
상세 요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약상대자’ 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li> <li>- 보안 침해 시도 및 취약점 점검보고서 : 계약 기간중 수시제공</li> </ul>		

PMR-005			
요구사항명	산출물 제출 및 관리	응락수준	필수
상세 요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약상대자’ 는 용역 완료시 아래의 산출물을 그 내용이 담긴 file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li> </ul>		
	<b>종 류</b>	<b>제출부수</b>	<b>비 고</b>
	산출물 관련 제반서류일체	1	file 제출

[붙임1]

##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 ① 사업자는 동국대학교(이하 대학)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2]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붙임3]의 보안 위약금을 대학에 납부한다.
-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4]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대학은 사업자를 부정당 업체로 등록한다.
-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담당자의 입회 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붙임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붙임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4] 누출금지 대상 정보

업체명 :

일 자 : . . .

대표자 : (인)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참여 제한</li> <li>○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li> <li>○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li> <li>○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li> </ul>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li> <li>○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li> <li>○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li> </ul>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 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붙임3]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계약금의 5%	총계약금의 3%	총계약금의 1%

\* 위규 수준은 [붙임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 · 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 · 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분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해당 정보누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고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붙임5]

## 보안 서약서(외부자용)

본인은 \_\_\_\_년 \_\_\_\_월 \_\_\_\_일부로 \_\_\_\_\_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대학의 안전보장 및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극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공개·누설 및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 한다.
3. 본인은 대학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대학에서 정하는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준수할 것이며, 적정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 누출(판매, 대여, 유용)하지 아니 한다.
4.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어떠한 처벌(민.형사상)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속	:	
	직	위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서약집행자	직	위	:	
	성	명	:	(인) 또는 서명

동국대학교 총장 귀하



## 보안 서약서(외부업체용)

본인은 \_\_\_\_\_년 \_\_\_\_\_월 \_\_\_\_\_일부로 동국대학교(이하 “대학” 이라 한다)의 \_\_\_\_\_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대학의 안전보장 및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극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공개·누설 및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 한다.
3. 본인은 대학의 개인정보보호지침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대학이 취급 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고 제공받은 자료를 목적 외 제 3자에게 누출(판매, 대여, 유용 등)하지 않음을 서약하며 대학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 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4.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민·형사상)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업체대표)	직위	:	
	성명	:	(인) 또는 서명
서약집행자	직급	:	
	성명	:	(인) 또는 서명

동국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기]

## 보안 확약서

본인은 동국대학교(이하 “대학” 이라 한다)와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금지 하겠습니다.
2. 본 업체 직원의 과실은 곧 당사의 과실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학의 손해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책임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보안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과 관계 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오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서약집행자 직	급 :	
성	명 :	(인) 또는 서명

동국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8]

## 열람 · 제공자료 관리대장

용역업체 관리담당자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년           사업명 :           사업주관기업:

연번	자료명	인계 및 인수				자료 반납	
		인계자	인수자	월일	장소	확인자	월일

[붙임9]

## 외부 노트북 관리대장

부서명 :

관리책임자 :

일자 YY/MM/DD	출입자 소속/성명	노트북 제품명	노트북 사용목적	부여 IP	담당자 체크사항		확인자명
					OS 패치 (최신 Hotfix 설치여부)	백신 설치 (바이러스 감염여부)	

[붙임10]

##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

---

부서명 :

관리책임자 :

순번	장비명	관리번호	반출자	반출 일시	용도	반입자	반입 일시

## 정 보 시 스템 반 출·입 내 역 서

결	정보시스템 담당자	정보통신보안 관리자	정보통신보안 담당관
재			

반출입 구분	반입 / 반출			
반출입 일자	년	월	일	
반출입 사유				
반출입 대상	구분	품명	규격	수량
기타 사항				
첨부/관련 문서				

## 보안성 검토 체크리스트

### 용역업체 보안

구분	점 검 내 용	반영 여부 (반영, 미반영, 향후 반영, 미적용 대상)
1	○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에 누출금지 대상정보 명시	
2	○ 계약서에 참가 직원의 보안준수사항과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위약금 부과, 누출금지 대상정보 명시, 향후 입찰참여 시 감점 등) 등 보안관련 특약조항 명시	
3	○ 용역사업 수행 관련 보안교육점검 및 용역기간 중 참여인력 임의 교체 금지	
4	○ 정보통신망도·IP 현황 등 용역업체에 제공할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비치, 보안조치 후 인계·인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5	○ 사업 종료시 외부업체의 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통해 비공개 자료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	
6	○ 용역업체로부터 용역 결과물을 전량 회수하고 비인가자에게 제공·열람 금지	
7	○ 용역업체의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반출·반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8	○ 비밀 및 중요외주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외부인력에 대한 신원조사·비밀취급인가, 보안교육 및 외부유출 방지 등 보안조치 강구	
추가 보안 사항		